

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

제1조(목적)

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투자자 간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, 그 외 업무 관련 법규(이하 “관련법규”라 한다)와 해당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지침에서 “수수료 등”이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,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, 투자일임업,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① 보수

-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- 나. 성과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. 다만 법제86조, 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4-65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등을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계약에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.
- 다. 판매보수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- 라. 신탁업자 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자산을 보관·관리하는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- 마.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일반사무관리업무 수행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② 수수료

- 가. 판매수수료 :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.
- 나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금전을 말하며,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자산에 귀속된다.

다. 투자일임수수료 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.

라. 투자자문수수료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 또는 투자자문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문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.

제4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

-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공모집합투자기구간, 투자일임재산간 또는 투자자문재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비용과 수익,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- ④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가. 판매보수: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5.
 - 나. 판매수수료: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5.
 - 다.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(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)에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(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합계: 제 가호 및 나호의 한도

제5조(수수료의 부과절차)

- ①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새로운 공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이 경우 관련 법규, 운용자산의 특성과 규모, 총비용의 수준 등을 고려하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집합투자기구와 운용상의 중요 변경사항이 없는 등 유사한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의 합의와 품의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.
- ③ 투자일임수수료 또는 투자자문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, 계산방법, 지급시기 등은 관련법규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체결하는 투자일임계약 또는 투자자문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회사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또는 계약에서 정한 보수 또는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보수나 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⑤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.

제6조(수수료의 인상)

- ① 회사는 이 지침에 따라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회사는 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의 변경 후 인상하여야 한다.

제7조(설명의무)

회사는 법 제47조(설명의무)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,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과 함께 이 기준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(“전자서명법”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), 기명날인, 녹취, 전자우편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, 우편,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투자광고)

회사는 투자광고(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2항 및 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지침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9조(공시 등)

- ① 회사는 이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이 지침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보수와 수수료는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및 제30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비용과 판매수수료 현황 제출로 같음할 수 있다.

제10조(지침의 제정 및 개정)

이 지침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정 및 개정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지침은 2009년 10월 19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

이 지침의 제정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, 투자자문, 투자일임계약의 수수료 부과 및 절차는 이 지침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본다.